

## 전문모금기관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

|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1. 단체 기본사항 |  | 사업연도            | . . . ~ . . . |
| ① 법인(단체)명  |  | ② 사업자등록번호(고유번호) |               |
| ③ 대표자 성명   |  | ④ 전문모금기관 지정일    |               |
| ⑤ 소재지      |  |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|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2.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⑧ 요건 충족 여부<br>및 의무이행 여부 | ⑨ 점검결과 |
| 가.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나.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다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라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마.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·배분 및 법인의 관리·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바.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(단체를 포함)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 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·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사.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각 공개할 것<br>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)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아.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8조제9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 :

(단체의 직인) [인]

귀하

위 전문모금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8조제10항 및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19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(통보기관의 장)

[인]

국세청장 귀하

### 작성 방법

-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모금기관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.
-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란은 전문모금기관이 작성하며,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.